

영등포 소방서 수난구조대청사 이전 설치공사
시 방 서

2009. 4

영 등 포 소 방 서

제 1 장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- 가.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 소방서 수난구조대청사 이전 설치시 수중계류 시설에 적용하며, 수중계류시설을 보강 정비하여 홍수대비안전하게 계류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.
- 나.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.
- 다.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내용에 대하여 시공자 및 현장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의견 대립시 계약서,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기준에 처리한다.
- 라. 제작 및 설치 시 물량 증감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관과의 협의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1.2 계약자의 책무

- 가. 계약자는 기자재의 설치 및 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구성품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.
- 나. 기자재를 제작, 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되었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자가 계약 후 기자재의 규격을 변경 하여야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변경 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,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.

- 라. 현장여건상 경미한 규격변경이 필요하여 계약자가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3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

- 가. 수중 계류시설의 설치 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.
- 나.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 처리하고 처리 증빙 자료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하며, 중대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.
- 라. 계약자는 본 건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사고(인명, 구조대청사 부대 시설물의 파손, 화재, 안전사고 등)에 대비한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발생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, 본 구조대청사 및 타 시설물 손상시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

1.4 규 격

- 가. 모든 공사 재료는 한국산업규격(KS)을 기준으로하며, 상기 규격이외의 국제규격을 운용하고자할 때에는 그 규격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나.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규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수난구조대는 새로운 규격의 적용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1.5 보증

- 가. 본건의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. (단, 보증기간 이후라도 설치 후 최초 홍수(방류량 20,000톤/초)시 설치하자로 인한 이상여부 발견 시 무상조치

하여야 한다.

- 나.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제작설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무상으로 수리, 교체하여야 하며, 계류시설의 이상 발견 시 즉시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
1.6 준공

가.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일로 한다.

- 나. 제작설치 기간은 원활한 수난구조대청사의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제작 및 설치

2.1 구조대청사 이전 설치

가. 본 구조대 청사의 외형은 하부 수상부체 30M X 16M X 2M(길이X폭X깊이)이고 상부 건축 구조물은 실측하여 이전시 반영하여야 한다.

- 나. 구조대 청사는 기존 원효대교 남단지점에서 서강대교 남단 약 200M(기존 관공선 선착장 남단)지점으로 이전 설치하며 해상 이동거리는 약3.1KM로 추정함.

다. 구조대 청사 이전 공사전 계약자는 현장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하며, 이전 설치계획을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현장 감독관의 승인 후 공사를 진행 토록한다.

- 라. 구조대 청사 이전시 원효대교, 마포대교, 서강대교를 수상으로 이동하여야 하기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이전 계획을 수립도록 한다.

마. 구조대 청사 이전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.

2.2 수중 계류장치 설치

- 가. 수중 계류시설은 기존 시설을 철거(세부적으로 검토후 자료 감독공무원에게 제출)하고 보강된 계류시설을 설치한다. (설치위치는 계선·계류 장치도 도면을 참조 할 것.)
- 나. 교체하는 계류시설은 기존 계류시설의 위치, 설치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지력이 최대가 되도록 최적하게 설치하여 홍수시 안전하게 부상 후 정상 수위에 도달하면 안정되게 원상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.
- 다. 수중 계류시설은 한강 홍수시 팔당댐 방류량 37,000톤(유속3.31m/sec.)과 풍속 26m/sec.에도 충분한 계선·계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 교체품은 선박안전공단의 사전검사 및 설치 후 안전도 검사를 득하며, 현장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.

2.3 인도교 설치

- 가. 인도교(이하"도교")는 길이: 14M, 폭: 2M의 구조물로 장애인 휠체어 통행 가능토록 제작한다.
- 나. 도교의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재로 현장 자재 입고시 현장 감독관의 자재승인을 받도록 한다.
(알루미늄 판:A5083-H116, 형강재:A6061-T41, 용접봉:AWS 5183 또는 E-4301)
- 다. 알루미늄 판은 KS D 6701(또는 ASTM B209)에 준한 것이라야한다. 양극 산화 피막(Anodic Coating)을 본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,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라. 경사 식 구조물 부분은 미끄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에 방부목을 설치하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한다.
- 마. 방부목은 노출 식으로 일정한 강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2.4 SUPPORT PIPE 설치

- 가. SUPPORT PIPE는 HINGE식 구조물로 수상부 선체 외부에 설치한다.
- 나. HINGE부분에는 상하, 좌우 움직임에 의한 마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베어링을 시공한다.
- 다. HINGE부분의 용접검사는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 이상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.
- 라. SUPPORT PIPE의 선체외판의 접합부 이면에는 충분한 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.
- 마. SUPPORT PIPE와 와이어 로프간의 연결부분 및 칭사구조물 부분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충분한 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.

2.5 자재관리

- 바. 제작 및 보관 중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.
- 사. 재료는 신기, 부리기 및 운반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. 모든 파손 재료는 시공자 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.
- 아. 모든 자재는 가공전이나 후에 먼지, 기름 등의 오물에 더럽히지 않고, 보관 기간 중에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지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자. 사용 중 재질이나 규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별로 보관하고 적절한 표식을 해야 한다.
- 차. 기성제품의 규격은 설계도의 규격에 맞는지 자재 반입시 재질과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.
- 카. 비철금속은 상이한 재료(철강)와의 직접 접촉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조치하여야 한다.

※ 위 사항과 특기시방서와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해선 바지선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므로 좀더 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항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